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사단법인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사단법인 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1. 채용(계약)기간 : 채용시부터 2년 (연임 1회가능)
2. 급여수준 :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의함
3.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화) ~ 2026. 9. 18.(금)
 - 접수기간 : 2026. 9. 7.(월) ~ 2026. 9. 1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사무실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6 (군민자치센터 3층)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jinan365@naver.com)
 - 방문접수 : 평일 9:00 ~ 18:00시까지만 가능(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문 의 : (063) 433-1365

4.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별도양식사용가능)
3.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4.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주소 이전 내역 포함)
5.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해당자)
6.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7. 외국어인증 성적증명서 (해당자)
8. 법인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제안서(필수)
9. 연구실적, 입상실적 및 표창장 (해당자)
10.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가 필요로 하는 서류
 - ※ 첨부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5. 자격요건

□ 근거 규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1. 상근종사가 가능한 자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인사규정 제50조(정년) 센터장의 경우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4.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안군’으로 되어있는 자
5.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대상자>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 「형법」 제355조 및 제36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자원봉사센터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 ※ 경력, 학과, 교과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 *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자원봉사 확산에 기여하는 시민사회, NGO 비영리,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학과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
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자원봉사단체**

- ▶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 자원봉사활동 기획·지원,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훈련, 지역 협력체계 구축·운영, 자원봉사 조직 운영·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자(단순 자원봉사활동 제외)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명예퇴직 승진자, 지방의회의원 등
-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근거, 지방의회의원은 센터장 겸직 금지

***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재직 시(5급이하 경력 포함)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이 총 3년 이상인 공무원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장 등
- ※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위이므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
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 민법 또는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 임원 : 정관상 등기 임원(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 등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 ※ 해외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임원 활동 경력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음

※ 공통요건은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해당하여야 함

6. 채용(선발) 방법 및 결과 통지

- 제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제2차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선발위원회 면접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
 - ※ 최고득점자 계약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계약 추진하되, 평균합계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모 추진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함

7.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 본인의 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합격자 확정 후 14일로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단, 이메일을 통한 접수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